

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

제정	1980. 7. 18	조례 제 598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1. 3. 16	조례 제 323호
	2005. 10. 5	조례 제 630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전부개정	2020. 7. 2	조례 제203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시사의 편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2. 시사 편찬 및 발간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
제5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고문) 시장은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2020. 7. 2 조례 제2037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